

[일련번호 : 19]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관리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1. 업무개요

◻◻동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따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제3항 및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 및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할 장애인에 대하여 해당 장애인의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장애 등급 재판정 안내 공문을 통보하여 기일 내에 장애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여야 하고, 재판정 기한일 1개월 전까지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16명에 대하여 재판정 통보 또는 촉구를 누락하거나 정해진 기한보다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장애인 재판정 통보 및 촉구 부적정 내역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재판정 기한	통보·촉구 내역		재판정 일자	부적정 내역
				통보일자	촉구일자		
1			220326	적정	220303	220421	촉구 지연
2			220414	220125	-	220308	통보 11일지연
3			220414	220125	-	220324	통보 11일지연
4			220522	적정	미실시	220608	촉구 미실시
5			220525	적정	220509	220623	촉구 지연
6			220722	적정	220628	220729	촉구 지연
7			220806	220509	220711	220819	통보 3일지연 촉구 5일지연
8			221023	적정	220926	221114	촉구 3일 지연
9			230221	적정	230125	230323	촉구 4일지연
10			230906	230608	-	230714	통보 2일 지연
11			230813	적정	230718	240711	촉구 5일 지연
12			241020	적정	미실시	241204	촉구 미실시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